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4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 의 자 : 오승철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고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람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와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회의 통보 절차와 입증자료의 첨부, 과태료 부과 징수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5항)
- 라. 출석요구 불응, 서류제출 거부, 선서 또는 증언 거부의 횟수와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별표)

3. 검토의견

가. 입법 필요성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과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지방의회의 행정

- 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핵심적인 권한에 해당함.
- 그러나 출석요구 불응, 서류 미제출 또는 선서·증언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과태료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의 유형, 횟수 및 부과금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역시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의 산정범위, 의회와 시장 간의 통보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나. 입법 적정성

- 안 제9조제4항에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따른 고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것은 증인이 증언 거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2제1항 및 별표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서류 미제출, 선서 또는 증언 거부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을 구분한 것은 과태료 처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함.
-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해당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로 다른 감사 또는 조사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누적하여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별 감사 또는 조사 단위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됨.
-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장이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통보할 경우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과태료 부과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됨.
-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출석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 요구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제출기한이 합리적으로 부여되었는지,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법적 타당성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시장이 담당하고, 의회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입증자료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회의 감사·조사권과 집행기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구분한 것으로 권한 배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2제4항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한 것은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상위법의 절차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또한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절차가 충분히 안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결론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범위, 의회의 통보 및 입증자료 첨부, 시장의 부과·징수와 결과 통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객관성·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